

선 람	기 관 의 장

시 보

제9호 2023. 2. 28.(화)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3-78호	하천점용허가 고시	1
광양시 고시 제2023-79호	2023년 사방지 지정 고시(2차)	2
광양시 고시 제2023-81호	광양시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71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	3
광양시 고시 제2023-82호	광양시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42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	5
광양시 고시 제2023-83호	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	7
광양시 고시 제2023-84호	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변경 고시	9
광양시 고시 제2023-85호	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	10
광양시 고시 제2023-87호	하천점용허가 고시	12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3-101호	도로지정공고	12
광양시 공고 제2023-478호	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14
광양시 공고 제2023-505호	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	2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323, 행정2713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2일

광 양 시

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광양서천(지방하천)
점용자	주소	광양시 시청로 33
	성명	광양시장(문화예술과)
점용지역	위치	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630 외 2필지
	면적	6,045㎡
점용목적		토지의 점용
점용내용		KBS 전국노래자랑 녹화
점용기간		2023. 3. 17. ~ 2023. 3. 18.(2일)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안전총괄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고시 제2023 - 79 호

2023년 사방지 지정 고시(2차)

2023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『사방사업법』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,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. 2. 28.

광 양 시



1. 지정위치 :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산269-1 등 4필지
2. 지정면적 : 1,324㎡
3. 지형도면 : “붙임”참조
※ 사방지 고시 도면은 광양시 산림소득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가능
4. 지정사유 : 2023년 사방사업(사방댐·계류보전) 시행지
5. 지정사업의 종류 : 사방댐, 계류보전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(☎061-797-342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사방지 지정내역 1부.
2. 사방지 지정구역도 1부. 끝.

광양시 고시 제2023-81호

광양시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71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
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시 광영동 1089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71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2일

광 양 시



가. 공원의 위치: 광양시 광영동 1089 일원

나. 공원의 규모: 52,120.7㎡

다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 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71	광영의암 체육공원	체육공원	광양시 광영동 1089 일원	52,120.7	-	52,120.7	2015. 1. 29.	

라. 공원조성계획(공원 제171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구 분		변 경 전					변 경 후					증감(㎡) 주거 면적
		부지면적 (㎡)	사설면적 (㎡)	권 속 면(㎡)			부지면적 (㎡)	사설면적 (㎡)	권 속 면(㎡)			
				동수 (동)	권속면적 (㎡)	안면적 (㎡)			동수 (동)	권속면적 (㎡)	안면적 (㎡)	
계		52,120.7	25,730.0	1	251.0	251.0	52,120.7	25,026.0	1	251.0	251.0	-
① 공 원 시 설	소계	25,730.0	25,730.0	-	-	-	25,026.0	25,026.0	-	-	-	증 296.0
	기반시설	2,503.0	2,503.0	-	-	-	2,503.0	2,503.0	-	-	-	-
	조경시설	2,376.0	2,376.0	-	-	-	2,672.0	2,672.0	-	-	-	증 296.0
	휴양시설	527.0	527.0	-	-	-	527.0	527.0	-	-	-	-
	유흥시설	663.0	663.0	-	-	-	663.0	663.0	-	-	-	-
	운동시설	16,360.0	16,360.0	-	-	-	16,360.0	16,360.0	-	-	-	-
	편의시설	3,301.0	3,301.0	1	251.0	251.0	3,301.0	3,301.0	1	251.0	251.0	-
② 녹 지	소계	26,390.7	-	-	-	-	26,094.7	-	-	-	-	감 296.0
	녹지	22,096.7	-	-	-	-	21,800.7	-	-	-	-	감 296.0
	유수지	4,294.0	-	-	-	-	4,294.0	-	-	-	-	-

마.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171	광명 의안 체육공원	- 조경시설면적 변경 - 전망데크 : (중) 296㎡ - 녹지면적 변경 : (감) 296㎡	체육공원 서측에 설치되는 스포츠 комплек스와 체육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데크 설치

바.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관계 조서 및 도면: 게재 생략(평양시청 공원과 비치)
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양시청 공원과(20061-797-29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고시 제2023-82호

광양시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42호) 결정(변경) 및
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시 마동 1232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42호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2일

광 양 시



가. 공원의 위치: 광양시 마동 1232 일원

나. 공원의 규모: 16,789㎡

다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 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42	와우공원	근린공원	광양시 마동 1232 일원	16,789	-	16,789	2008. 6. 13.	

라. 공원조성계획(공원 제142호)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변 경 전			변 경 후			비 고		
		부지면적 (㎡)	건 속 물		공 작 물 (가)	부지면적 (㎡)	건 속 물		공 작 물 (가)	
			바닥면적 (㎡)	면면적 (㎡)			바닥면적 (㎡)			면면적 (㎡)
총 계		16,739.0			21	16,739.0			32	변경없음
시설소계		1,012.7			21	3,758.8			32	증)2,746.1㎡
기 반 시 설	소계	817.4				2,248.4				증)1,431.0㎡
	도로	817.4				2,050.3				증)1,232.9㎡
	광장	-				198.1				증)198.1㎡
조경시설		-				260.4				증)260.4㎡
휴양시설		83.4			9	91.9			15	증)8.5㎡
유희시설		-				563.4			5	증)563.4㎡
운동시설		111.9			12	95.7			12	감)16.2㎡
편익시설		-				499.0				증)499.0㎡
녹지 및 기타		15,776.3				13,030.2				감)2,746.1㎡

마.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42	와우공원	- 시설물 설치 증 2,746.1㎡ - 녹지 감 2,746.1㎡	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무장애 산책로 및 놀이공간,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

바.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관계 조서 및 도면: 게재 생략(평양시청 공원과 비치)
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양시청 공원과(☎061-797-29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2. 28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-64 (도이동) 외 4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2. 28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 물 번 호 부 여 5 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51	전라남도 광양시 향만7로 71-64 (도이동)	20230228	20090902	광양항 향만시설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2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995-6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48	20230228	20081001	법정리명에서 인용
3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701-2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902-20	20230228	20081001	신재 최산두 선생의 호에서 인용
4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1404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묵백길 56	20230228	20170628	옥곡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규 개설
5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871-3	전라남도 광양시 성황8길 24 (성황동)	20230228	20210210	옛 마을이름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

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변경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〈변경 내역〉

연번	도 로 명 주소		변경고시일	변경사유
	변 경 전	변 경 후		
1	광양시 진월면 방죽1길 20-5	광양시 진월면 방죽1길 22	2023. 2. 28.	신청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(출입구 변경)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☎ 797-3388)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2. 28.

광 양 시 장

광양시 고시 제 2023-85호

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.

〈폐지 내역〉

연번	폐지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 폐지 사유
1	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각길 58	2023. 2. 28.	건축물 멸실 (※상세내역 불임참조)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☎ 797-338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2. 28.

광 양 시 장

도로명주소 폐지 대상

연 번	업무 구분	도로명주소	건축물대장 말소일 (건축물멸실 확인일)	폐지 고시일	폐지 사유
1	건물번호 폐지	광양시 다압면 매각길 58	2023. 2. 27.	2023. 2. 28.	건축물 멸실

광양시 고시 제2023-87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28일

광 양 시 장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광양서천
점용자	주소	광양시 봉강면 구서길 23-5
	성명	안*심
점용지역	위치	광양시 옥룡면 구서리 394-1
	면적	170㎡
점용목적		토지의점용
점용내용		농작물 경작
점용기간		당초: 2008. 2. 1. ~ 2023. 1. 31. 변경: 2023. 2. 1. ~ 2027. 12. 31.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안전총괄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도 로 지 정 공 고

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.

2023. 2. 23.

광 양 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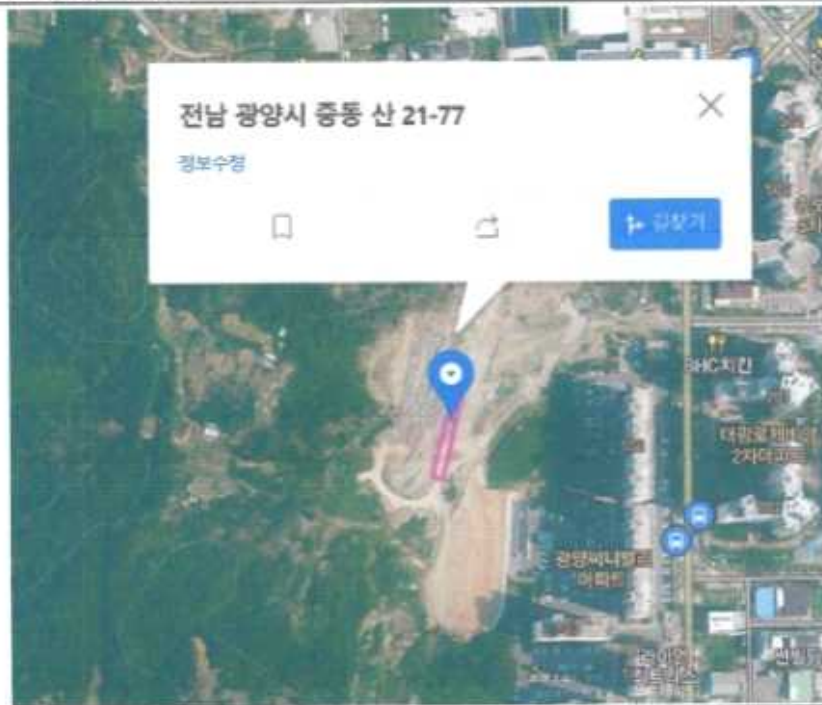
1. 공 고 명: 도로지정 공고
2. 지정근거: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45조 제1항
3. 공고기간: 2023. 2. 24. ~ 2023. 3. 10.
4. 도로지정 공고내용

건축위치	소유자	길이	너비	도로위치	면적	이해관계인 동의여부
광양시 중동 713-5번지 외 3필지	(주)유한빌딩, (주)유한하우징	215.5m	8m	광양시 중동 713-8, 713-7, 마동 1020-8번지	1,724㎡	동의

5. 공고방법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(☎061-797-317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 <임의>



현황도

축척 1/1,600, 1/1,200

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4일

광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

2. 개정이유

-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감면 규정을 명확화하고
- 환경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타행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감면 규정 명확화(안 제20조 제2항제2호)
-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마련(안 제18조 제1항, 별표5)
-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 변경(안 별표5)
-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방법을 「행정절차법」에 부합하도록 변경(안 제18조제1항제4호)
-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시기 명확화(안 제18조제2항제3호)

○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규정 신설(안 제20조의2)

4. 개정 조례안 : 별첨

5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24. ~ 2023. 3. 17.(22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 : 하수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직접방문(서면), 팩스, 전자우편

라. 의견 제출할 곳

○ 주 소 : 전남 광양시 중마로 60, 하수도과(중동) (우 57793)

○ 전 화 : 061-797-3469

○ 팩 스 : 061-797-4189

○ 전자우편 : nadasera@korea.kr

※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목 중 “개별건축물”을 “건축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1조제1항”을 “법 제61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공고한”을 “고시한”으로 한다.

1.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,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4.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광양시의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고시하고 광양시 누리집에도 고시하여야 한다.

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건축물의”를 “건축물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“금액”을 “최종 금액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건축물에 대한”을 “건축물 등의”로, “그 신청 전일”을 “사용승인(준공) 전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제2호 본문 중 “산정한다”를 “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광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원인자부담금의 사용)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, 증설, 이설,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 - 현 행

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(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)

$$\bigcirc \text{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} = \frac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(원)}}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(m}^3\text{/일)}}$$

※ 공공하수처리시설 [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(간선관거)를 포함한다.]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총사업비는 전년도(직전년도)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(차량운반구와 공기구비품은 제외)의 순액으로 한다.(순액 = 비유동자산 - 감가상각비 총액)

※ 시·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·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.

[별표 5] - 개정안 (환경부 개선 권고안)

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(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)

-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, 총사업비, 생산자물가상승률(α)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$$\text{단위단가} = \frac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(원)}}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}(m^3/\text{일})} \times \alpha$$

$$\triangleright \alpha = (1 + R_1) \times \cdots \times (1 + R_n)$$

$\triangleright R(\%)$: 전년대비 물가상승률

n :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

※ 공공하수처리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(간선관로)를 포함한다.)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.

※ 시 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.

-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(β)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.

$$\text{단위단가} = \frac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(원)}}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}(m^3/\text{일})} \times \alpha \times (1 + \beta)$$

$$\triangleright \alpha = (1 + R_1) \times \cdots \times (1 + R_n)$$

$\triangleright R(\%)$: 전년대비 물가상승률

n :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

$$\triangleright \text{수질오염 부과계수}(\beta) = f(C)$$

$$= f\left(\frac{\text{연계처리 폐수의 수질}}{\text{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}}\right)$$

- 수질오염 부과계수(β)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(TOC 또는 BOD)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(1차 처리수 포함) 수질의 비율(C)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-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.
-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, 시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< 수질오염 부과계수(표준값 예시) >

유기물질 농도 비율(C)	1.0 이하	$1.0 < C \leq 1.3$	$1.3 < C \leq 1.7$	$1.7 < C \leq 2.0$	2.0 초과
수질오염 부과계수(β)	0	0.1	0.2	0.3	0.4

-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(TOC 또는 BOD)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, 다른 항목(SS, TN, TP)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	제18조(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3항----- ----- -----.
1.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	1.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,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4.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	4.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/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단가를 결정하여 광양시의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고시하고 광양시 누리집에도 고시하여야 한다.
5.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	5. ----- ----- -----

발생량(세제곱미터/일)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(원/세제곱미터/일)를 곱하여 산정한다.

② 원인자부담금의 통보,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통보시기 :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인허가 당시 단위단가가 개산금액으로 통보한다.

2. 부과시기 및 금액산정

가. 부과시기는 사용승인(준공검사)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. 다만,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때는 그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채부과할 수 있다.

나. ~ 라. (생략)

3. 납부기한

가.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하며,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(준공검사)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까지로 한다.

----- 고시한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건축물 등 -----
-----.

2. -----
가. -----

----- 최종 금액 -----
-----.

-----.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가. -----

----- 건축물 등의 -----

----- 사용승인(준공) -----
전-----.

나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20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(생 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(원/m³/일)를 곱하여 산정한다.

1. (생 략)

2.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· ④ (생 략)

<신 설>

나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광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한다. -----
---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원인자부담금의 사용)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, 증설, 이설,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광양시 공고 제2023-505호

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8일

광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- 검사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산 검사의 내실을 다지
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(안 제1조 및 제7조제3항)
- 실무보조자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
삭제 (안 제8조의2)
-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 - 검사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따로 절차 없이 신분이 상실됨
 - 가.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 - 나. 질병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- 의회는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의 방법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.
- 가.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- 나. 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
- 다.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

4. 개정 조례안 : 별첨

5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28. ~ 2023. 3. 20.(22일간)

6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 : 회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직접방문(서면), 팩스, 전자우편

라. 의견 제출할 곳

- 주 소 :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, 회계과(우 57785)
- 전 화 : 061-797-2276
- 팩 스 : 061-797-2581
- 전자우편 : kimji567@korea.kr

※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광양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 1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**조례명** :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[붙임 2]

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4조제3항”을 “제15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검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. 이 경우 대표위원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.

1.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2. 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의 방법에 따라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2.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
3.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

제7조제3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5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, 선임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 제6조의2 <신 설>	제1조(목적)----- -----제150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6조의2(검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 <u>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. 이 경우 대표위원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.</u> 1. <u>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</u> 2. <u>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</u> ② <u>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의 방법에 따라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</u>
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

① 감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「공인회계사법」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8조의2(실무보조자) ① 위원

은 결산검사에 필요할 때에는 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2명 이내의 실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② 위원을 보조하는 실무보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.

1.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
2. 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,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

3. 그 밖에 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
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

①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「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」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실무보조자) <삭제>